



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.경제부.사회부
발 신 경제민주주의21
일 시 2020. 06. 08. (총 3 쪽)
문 의 전화 | 010-3060-1917 이메일 | econdemos21@protonmail.com
제 목 [보도자료]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향후 대응

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향후 대응

- 인사혁신처,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직무관련성 심사 과정 답변 거부
- 김조원 민정수석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판단과 상치되는 문제점
- 최 전 비서관 보유주식 심사의 적절성은 국회 국정감사로 규명해야
- 공직자 주식보유 심사의 유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

1. 최근(5/29), 인사혁신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보유했던 (주)프로토타입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한 경제민주주의21(대표: 김경울 회계사)의 2020.5.12.자 질의서(https://econdemos21.com/press/ed200512_press/)에 대해 **공직자윤리법상의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답변을 거부**하였다. 그러나 경제민주주의21은 이와 유사한 사례인 **김조원 민정수석의 주식보유에 대해서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)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**했다는 점에서 최 전 비서관의 주식보유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일관성을 결여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, 향후 **국회가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심사의 적절성을 철저하게 감시**할 것을 촉구한다. 한편 경제민주주의21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최 전 비서관 사건을 계기로 **주요 공직자의 주식보유 또는 매각 과정이 적절**한 것인지 **자체적으로 검증**할 것이며, **공직자 주식보유 심사의 유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**할 것이다.

2. 인사혁신처는 심사위원회가 “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·감독하는지를 고려해 직무관련성을 판단”한다고 답변하였다.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에 규정되어 있다.

<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>

<p>제27조의8(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) ① 법 제14조의5제8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<u>그 직무를 지휘·감독</u>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1.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·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</p> <p>2. 각종 수사·조사·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</p> <p>3. 인가·허가·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</p> <p>4. 조세의 조사·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</p> <p>5. 법령상 지도·감독에 관련되는 직무</p> <p>6. 예산의 편성·심의·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</p> <p>7.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</p> <p>8.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</p> <p>② 심사위원회는 일정한 유형이나 종류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할 수 있다.</p> <p>[전문개정 2009. 2. 3.]</p>
--

위 판단기준에 따르면 최 전 비서관 보유주식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. 왜냐하면 최 전 비서관은 보유 주식을 발행한 (주)프로토타입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의 직무평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심사위원회가 위 시행령상의 판단 기준을 상식적으로 적용했다면 최 전 비서관의 보유주식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3. 최 전 비서관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판단은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. 예를 들어 심사위원회는 본 사안과 매우 유사한 사안인 김조원 민정수석의 한국항공우주산업(주)(이하 “KAI”) 주식 보유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김 민정수석이 이 주식을 매각 (<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3809417>)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. 공직기강 비서관이 민정수석실에 속해 있고, 그 직무 범위가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과 **장차관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복무평가를 담당**한다는 점에서, 사실상 민정수석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. 그런데 최 전 비서관의 주식 보유는 직무관련성이 없고, 김 민정수석의 주식보유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.

4. 작년 하반기 이후 국론을 극심하게 분열시켰던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사모펀드를 통로로 한 기업주식 보유나 이번 최 전 비서관에 대한 석연치 않은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은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의 주식 보유에 관해 많은 제도적 공백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. 이에 경제민주주의21은 ▲주요 공직자의 주식보유 또는 주식매각 실태에 대한 검증을 통해 **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**하고 ▲공직자윤리법이 규율하여야 할 **주식보유 또는 주식보유와 사실상 동일시하여야 할 유사 증권 보유의 범위 확대** ▲주식백지신탁 **심사과정의 투명한 공개** ▲주식백지신탁 의무의 **면탈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** 등을 내용으로 하는 **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**할 것이다. 끝.